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71144 개인회생

예정 기일 : 2020.08.25

담당재판부 : 개인회생10단독

법원주소보 요인숙

직통 전화 : 인가전 031-210-1360 / 인가후 131 팩 스 :
2/ 팩지1026/면책1189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발송처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영통구 범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1651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신처
1019 - 6/ 1동509호

서지우

B6 495 52 00
수원M 수원



16489

2060932-112137
(개인회생과 개인회생10단독)

2019-253-171144-765

채권번호1

2019 개회 171144 채무자 박규서 (801212 -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2020 . 05 . 29 .

목록작성일: 2020 . 05 . 29 .

채권현재액 합 계	합계 원금 이자	238,710,935원 237,992,369원 718,566원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101,700,000원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137,010,935원
--------------	----------------	--	-------------------	--------------	-------------------	--------------

※ 개시후이자 등 :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을 제581조 제2항, 제 446조 제1항 제1, 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

채권 번호	채 권 자	채권의 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의 내용				부속서류 유무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1	서지우	2019. 05. 25.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 1동509호 (전화) 010-9220-3440 (팩스)		
		2019. 05. 25.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20,000,000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속서류 (①, 2, 3, 4)
		120,000,000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			
		0원				
2	제이비 우리캐 피탈 (주)	2018. 10. 08. 자동차담보대출 17,800,000원		[0606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6, 18층(금암동) (전화) (팩스)		
		14,951,424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14,951,424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속서류 (①, 2, 3, 4)
		14,951,424원	부채잔액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0원				
3	(주)하 나은행	2017. 08. 17. 신용대출금 14,583,342원		[04523] 서울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전화) 1588-1111 (팩스) 02-771-2419		
		14,605,153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14,583,342원에 대한 2019. 10. 17.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14,583,342원	부채증명원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21,811원	부채증명원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3-1	경기신용보증재단	2017. 08. 17. 채무자의 3번 채무를 연대보증 (보증서 발급 기관)	[03187]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2층(이의동,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전화) 031-259-7700 (팩스)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장래의 구상금 미발생	보증한도액 20,000,000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미발생		
4	신한생명보험(주)	2018. 07. 23. 신용대출금 10,000,000원	[04542]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358(올지로2가) (전화) 1588-5580 (팩스) 02-752-9142	
		7,528,906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7,495,000원에 대한 2019. 10. 17.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7,495,000원	부채증명원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33,906원	부채증명원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5	(주)신한은행	2016. 12. 26. 신용대출금 5,600,000원	[04538]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전화) 02-756-0505 (팩스) 02-778-4980	
		5,600,000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5,600,000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5,600,000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0원		
6	(주)우리은행	2018. 04. 18. 신용대출금 14,652,280원	[04632]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전화) 02-2002-3000 (팩스) 02-2002-5637	
		14,705,895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14,652,280원에 대한 2019. 10. 17.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14,652,280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53,615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7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2018. 03. 06. 신용대출금 15,000,000원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0층(남대문로4가,서울상공회의소) (전화) 1566-7979 (팩스) 02-6743-7979	
		15,009,821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15,000,000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15,000,000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9,821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8	롯데카드(주)	2017. 07. 14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06729] 서울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전화) 1588-8100 (팩스) 02-2165-5860	
		879,957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877,800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연 24.00%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877,800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2,157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9	신한카드(주)	2013. 10. 22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04551]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A동 21층 (전화) 1544-7000 (팩스)	
		3,693,965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3,693,600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3,693,600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365원	부채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10	하나카드(주)	2017. 08. 18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04522]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24(다동) (전화) 1599-1155 (팩스)	
		607,224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605,196원에 대한 2019. 10. 17.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605,196원	부채잔액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2,028원	부채잔액증명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6.)	
11	부천축산업협동조합	2016. 07. 11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14725]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50(송내동) (전화) 032-667-4155 (팩스)	
		1,390,415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1,386,229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1,386,229원	부채확인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4,186원	부채확인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12	삼성카드(주)	2016. 09. 30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06212]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2가) (전화) 1588-8700 (팩스)	
		972,356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963,000원에 대한 2019. 10. 16.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963,000원	채무확인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9,356원	채무확인서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0. 15.)	

13	현대카드(주)	2015. 12. 01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0374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여의도동) (전화) 1577-6000 (팩스) 02-2165-5860		
		1,002,559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991,160원에 대한 2019. 11. 20.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991,160원	신용카드이용정보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1. 19.)		
		11,399원	신용카드이용정보 참조 (산정기준일 2019. 11. 19.)		
14	신용보증기금	2020. 02. 14. 국민은행>>대위 변제금 37,193,338원	[04090] 대구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전화) 053-430-4085 (팩스)		
		37,763,260원 및 이중 원금잔액 금 37,193,338원에 대한 2020. 04. 25.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input type="checkbox"/> 부속서류 (1, 2, 3, 4)	
		37,193,338원	채무잔액확인서 참조 (산정기준일 2020. 04. 24.)		
		569,922원	채무잔액확인서 참조 (산정기준일 2020. 04. 24.)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단위 : 원)

채권 번호	채 권 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③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등으로 도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회생채권액
		② 채권현재액(이자)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1	서지우	120,000,000	91,000,000	29,000,000	91,000,000
		0			
2019. 05. 25.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집합건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 5층 509호 (임차물건용도 : 주거용) 환가예상액(시가) 130,000,000원의 70% = 91,000,000원 선순위 담보권 없음					
2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4,951,424	10,700,000	4,251,424	10,700,000
		0			
2018. 10. 08. 저당권, 담보한도액 10,700,000원 [자동차] 쉐보600 차량번호 : 21러2989 환가예상액(시가) 18,900,000원의 70% = 13,230,000원					
합 계		134,951,424	101,700,000	33,251,424	101,700,000
		0			

[전산양식 A5433]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19 개회 171144 개인회생

채 무 자 박규서 (801212 - 2*****)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05 . 29 .

채 무 자 박규서 (인)

수원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2019 개회 171144 채무자 박규서 (801212 - 2*****)

변 제 계 획 (안)

2020 . 05 . 29 . 작성

1. 변제기간

[2020]년 [02]월 [13]일부터 [2023]년 [09]월 [13]일까지 [44]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변제기간 동안 [명진테크] 에서 받는 월 평균수입 [1,978,530]원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1.1]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기준중위소득 : 월 [1,826,960]원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을 제579조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1,096,176]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2020]년 [02]월 [13]일부터 [2023]년 [09]월 [13]일까지 [44]개월간

① 월평균수입	② 월평균생계비	③ 월평균가용소득(①-②)	④ 월회생위원 보수	⑤ 월실제가용소득(③-④)	⑥ 변제횟수 (월)	⑦ 총실제가용소득 (⑤X⑥)
1,978,530원	1,096,176원	882,354원	0원	882,354원	44회	38,823,576원

나. 재산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1) 채권의 내용

(단위 : 원)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가. 채권의 내용

채권 번호	채 권 자	① 채권현재액(원금)	③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
		② 채권현재액(이자)	⑤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1	서지우	120,000,000	91,000,000	29,000,000
		0		
		2019. 05. 25.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집합건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 5층 509호 (임차물건용도 : 주거용) 환가예상액(시가) 130,000,000원의 70% = 91,000,000원 선순위 담보권 없음		
2	제이비우리카페 탈(주)	14,951,424	10,700,000	4,251,424
		0		
		2018. 10. 08. 저당권, 담보한도액 10,700,000원 【자동차】 쉐보레600 차량번호 : 21러2989 환가예상액(시가) 18,900,000원의 70% = 13,230,000원		

나. 변제방법

-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예상되는 채권액(㉓)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㉔)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 (3)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㉔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에서 월회생위원보수를 차감한 월실제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제1회부터 제44회까지는 [882,361]원씩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38,823,884]원이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2020]년 [02]월 [13]일부터 [2023]년 [09]월 [13]일까지 [44]개월간 합계 [44]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2020]년 [02]월 [13]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13]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13]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 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용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기타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13]일부터 [2023]년 [09]월 [13]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13]일에 변제

매 []개월마다 []일에 각 변제

기타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가. 변제금액의 유보

-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3)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회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5, 6, 7]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에 순차 임치하고, 회생위원회는 이를 즉시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장래의 구상권 처리>

채권번호 3-1번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변제기간의 단축>

채권번호 1번 서지우, 2번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별채권 예정부족액 확정결과에 따라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이 변동되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 변제기간은 그 단축된 기간으로 한다. 이경우 최종 월의 월 변제예정액은 각 개인회생채권의 잔존 [원금]으로 한다.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단위 : 원)

③ 월평균가용 소득	882,354	④ 월회생위원 보수	0			
(A) 월실제 가용소득 (③ - ④)	882,354	(B) 변제횟수	882,361	44 회	(C) 총가용소득	38,823,884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별지기재와 같음

3. 변제율

원금의 [28.49]%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 원)

(J) 청산가치	35,463,178	(K)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38,823,884
		(L) 현재가치	35,838,748

제1회 ~ 제44회분 변제예정액 (2020 . 02 . 13 ~ 2023 . 09 . 13)

(단위 : 원)

채권 번호	채 권 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P)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 금)	미확정채권액 (원 금)	확정채권액 (원 금)	미확정채권액 (원 금)	확정채권액 (원 금)	미확정채권액 (원 금)
1	서지우	0	29,000,000	0	187,746	0	8,260,824
2	제이비우리캐피탈(주)	0	4,251,424	0	27,524	0	1,211,056
3	(주)하나은행	14,583,342	0	94,413	0	4,154,172	0
4	신한생명보험(주)	7,495,000	0	48,523	0	2,135,012	0
5	(주)신한은행	5,600,000	0	36,255	0	1,595,220	0
6	(주)우리은행	14,652,280	0	94,859	0	4,173,796	0
7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15,000,000	0	97,110	0	4,272,840	0
8	롯데카드(주)	877,800	0	5,683	0	250,052	0
9	신한카드(주)	3,693,600	0	23,913	0	1,052,172	0
10	하나카드(주)	605,196	0	3,919	0	172,436	0
11	부천축산업협동조합	1,386,229	0	8,975	0	394,900	0
12	삼성카드(주)	963,000	0	6,235	0	274,340	0
13	현대카드(주)	991,160	0	6,417	0	282,348	0
14	신용보증기금	37,193,338	0	240,789	0	10,594,716	0
합 계		103,040,945	33,251,424	667,091	215,270	29,352,004	9,471,880
총 계		(G) 136,292,369		(H) 882,361		(I) 38,823,884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 번호	채 권 자	(D) 개인회생채권액		(P)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 금)	미확정채권액 (원 금)	확정채권액 (원 금)	미확정채권액 (원 금)
1	서지우	0	29,000,000	0	8,260,824
2	제이비우리캐피탈(주)	0	4,251,424	0	1,211,056
3	(주)하나은행	14,583,342	0	4,154,172	0
4	신한생명보험(주)	7,495,000	0	2,135,012	0
5	(주)신한은행	5,600,000	0	1,595,220	0
6	(주)우리은행	14,652,280	0	4,173,796	0
7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15,000,000	0	4,272,840	0
8	롯데카드(주)	877,800	0	250,052	0
9	신한카드(주)	3,693,600	0	1,052,172	0
10	하나카드(주)	605,196	0	172,436	0
11	부천축산업협동조합	1,386,229	0	394,900	0
12	삼성카드(주)	963,000	0	274,340	0
13	현대카드(주)	991,160	0	282,348	0
14	신용보증기금	37,193,338	0	10,594,716	0
합 계		103,040,945	33,251,424	29,352,004	9,471,880
총 계		(G) 136,292,369		(I) 38,823,884	

수 원 지 방 법 원

통 지 서

수 신 수신처 참조
사 건 2019개회171144 개인회생
채 무 자 박규서 (801212-2185010)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10, 601동, 302호(권선동, 보성,유원아파트)
송달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 305호(고잔동,대덕프라자)(송달영수인 : 송기서)

이 법원은 2020. 6. 24. 10:00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 음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이의기간: 2020. 8. 10.까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
① 2020. 8. 25. (화요일) 14:00, ② 수원지방법원 504호 법정
4. 채무자 유의사항
①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 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561-915-10409703]계좌(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치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유의사항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

이 계속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 신고서를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제10회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법원에 이의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 16512,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 ③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채권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변제계획에 따라 입금되어야 할 월 변제액과 수 회 계속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최초 입금액이나 변제계획 등의 수정 후 입금액의 경우에는 누적된 금액이 입금되어 금액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6.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대표전화 031-210-1114로 문의바랍니다.

7. 채권자의 명의변경(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개인회생」에 있는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신고서 양식으로 제출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4.

판사 김종찬



수신처 :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2019개회171144 개인회생

채 무 자 박규서

채권번호		채권자명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 채권번호란에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20 . . .

채권자 (인)

수원지방법원 제10회생위원 귀중

☞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까지 위 신고서를 회생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